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34호

나. 발 의 자 : 이용균 의원(찬성자 16명)

다. 발의일자 : 2024년 4월 3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 2.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관람료를 감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시립과학관의 관람료를 감면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의4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관람료를 면제하고자 발의된 것임.

##### 나.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운영 및 관람료 혜택 현황

-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은 강북권역에 과학 분야 체험·전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운영 중인 시설임(개관 2017.5.19.).

#### <과학관 개요>

○ 위치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 규모	부지면적 25,875㎡ / 연면적 12,376㎡ / 전시면적 4,260㎡	
○ 총공사비	423억 4천 9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예산현황	약 46억 6천 1백만원(2024년 기준)	
○ 주요시설		
층 별	면적(㎡)	주요 시설
옥상	3,429.97	옥상정원, 데크쉼터, 태양광 시설
지상 3층	1,528.09	상설전시실(R), 1교육실(생물), 2교육실(화학), 3교육실(지구과학), 교육운영사무실, 북&독(대기실)
지상 2층	3,429.97	상설전시실(O, B), Yy어린이전시실, 열린방(자원봉사실), 직원사무실, 천체관측실, 데크쉼터
지상 1층	4,217.34	상설전시실(G), Y어린이전시실, 토네이도, 메이커스튜디오, 사이언스홀(강당), 사이언스숍, 도서실, 4교육실(물리), 운영사무실, 아이디어 제작소, 수장고, 안내/매표소, 아기쉼터
지하 1층	3,201.02	주차장,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직원휴게실, 샤워장

- 동 과학관의 관람료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1)에 따라 서울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별표에 따라 현재 성인 2천원, 청소년 이하는(7~19세) 1천원을 받고 있음.(첨부자료1)

1)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이와 관련하여 동 과학관의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 2018년부터 2023년말까지의 총 관람객은 47만 5천 7백여명이며, 관람료 수입은 4억 2천 8백여만원에 달하고 있음.

**<과학관 연도별 관람객과 관람료 수입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관람객수	120,055	133,706	21,771	33,717	66,589	99,871	475,709
관람료 수입	113,425	106,477	20,511	38,218	70,394	79,018	428,043

- 그리고 동 조례 제6조(관람료의 감면)에 따르면 과학관의 요금체계는 면제와 50% 감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1만 7천 8백여명이 약 3억 2천 7백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음.

**<과학관 개관 이후 무료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천원)

유아	다둥이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	청소년	기타	합계
103,015	9,051	4,759	3,722	511	23,607	73,151	217,816
47.3%	4.2%	2.2%	1.7%	0.2%	10.8%	33.6%	100%

※기타: 공무수행, 서울특별시명예시민, 20명 이상 단체 인솔자, 시 인정 등

- 이 중 동 개정조례안은 요금면제 대상에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의4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이나 외교사절단, 공무수행자, 국가유공자, 서울특별 명예 시민과 같이 특별한 자격이나 명예를 갖춘 자를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례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조치라 하겠음.

- 또한 서울시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는 우수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6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11. (생략)  <신설>  12. (생략)  ② (생략)	제6조(관람료 감면) ①-----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의4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다만 동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카드의 발급이 필요하지만, 발급 관련 근거<sup>2)</sup>가 최근(2024.3.26.개정)에 마련됨에 따라 아직 카드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동 규정이 신설될 경우 과학관 현장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인증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경주하는 동시에 조속히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카드가 발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자원봉사를 이유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sup>3)</sup>,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요금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의4(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

3) 제2조(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혜택은 ‘면제’ 대신 ‘감면’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같은 법에서 의미하는 대가는 해당 봉사활동에 대해 실비 이상의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더욱이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면제는 대가성인 반면 감면은 대가성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되나 이 또한 대가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감면 적용 주장은 다소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참고로 이와 같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과학관의 관람료 감면과는 별개로, 동 과학관은 그 특성상 청소년 관람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과학관이나 학생 대상 시설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관의 관람료를 무료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성찬	02-2180-8061

---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첨부자료1]

##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 1. 관람료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30명 이상)	
어른	4천원	3천원	20세 ~ 64세
청소년	2천원	1천5백원	13세 ~ 19세
어린이	2천원	1천5백원	7세 ~ 12세
노인	2천원	1천5백원	65세 이상
장애인	2천원	1천5백원	
국가유공자	2천원	1천5백원	

### 2.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구분	수량	금액
사진 및 비디오 촬영	1회	2만원
사진 원판 이용	1장	2천원